

알기 쉬운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해설

한영섭 / 공정위 경쟁촉진과장

I. 시작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약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이 시장기능에 따라 효율성 증진 및 소비자후생증대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실체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규정과 경쟁제한적 또는 공정거래 저해적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은 후자에 속한다.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는, 우리 나라의 유통체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계열화되어 있는 등 비합리적인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또한 국내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도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적 시장구조로 변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대체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그리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¹⁾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대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일반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 개관

I.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확립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라 함은 경쟁의 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경쟁 그 자체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매우 포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의 공정성에

1)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는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경쟁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기업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거나 또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게 되면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도 있고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나 소비자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1항의 규정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한 거래’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 자체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경쟁의 수단·방법은 물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부당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우려’란 현실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 추상적인 위험성까지 포함한다.

2.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실무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는 경쟁의 침해여부, 거래당사자의 자유의사 억압여부, 경쟁수단의 공정성여부가 주요 기준이 된다.

첫째, 경쟁의 감소여부는 시장점유율, 제품차별화의 정도, 유통경로, 신규진입의 용이성,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시장점유율은 일반적으로 10%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 순위가 3위 이내인 사업자가 법규상의 사실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일단 경쟁저해의 우려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높아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더라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으며, 유통경로가 계열화되어 있어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의 행위가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과다한 경품제공 등 일종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이는 행위들도 그것이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보아 경쟁저해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떤 사업자가 특정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거래상대방의 자유의사 억압여부와 관련하여, 자기의 우월적 지위나 거래상대방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참여여부, 거래처선택, 거래조건설정 등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을 억압하는 경우는 일단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

셋째, 경쟁수단의 공정성과 관련, 예컨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경쟁사업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이나 그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정에는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의 경우는 어떠한 행위가 법규상의 위법요건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며, ‘부당하게’의 경우는 어떠한 행위가 법규상의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행위의 공정거래 저해성을 검토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III.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③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⑦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다시 9가지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거래거절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수사업자들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당하게'는 판매목표강제,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심결례〉 (주)OO의 거래거절행위 ('97.5)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주)OO(내의 제조업체)이 자신의 대리점에게 전문점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과조치 없이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2. 차별적 취급

차별적 취급이란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또는 계열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다르게 설정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예컨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게 되나, 대량구매 등에 따른 원가차이의 반영, 수요의 변동, 상품의 특성 등에 기인한 합리적인 차별인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심결례〉 OO전자(주) 외 4개사의 차별적 취급 ('97.2)

공정거래위원회는 OO전자(주)가 공장소화물 운송시 자기의 계열사인 △△물류(주)에 대해 유사

한 동종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택배운송용역을 의뢰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3.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 배제란 상품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요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의 위법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거래량,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받는 영향, 대체재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곧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경우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심결례〉 (주)OO의 군납 치약에 대한 부당염매 ('83.6)

공정거래위원회는 (주)OO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방부 치약구매 입찰시 시가(개당 21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개당 1원에 입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4.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자기의 상품 또는 거래조건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처럼 고객을 오인시켜(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 인지의 여부는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행위가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심결례〉 (주)OOO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97.11)

공정거래위원회는 (주)OOO이 시외전화서비스 제공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시외전화서비스 번호로 자동연결되는 '082선택기' 72,362대 등을 무상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하여 시정명령

5. 거래강제

거래강제란 상품 등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등을 끼워팔거나, 부당하게 자기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전자의 경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제품이 있는지 여부, 본 제품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끼워파는 제품시장에서의 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결례〉 7개 예식장의 거래강제행위 ('97.5)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들이 자기의 예식실을 사용하려는 고객에게 웨딩드레스, 식당, 사진 등의 서비스 이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지위 남용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구입 또는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판매목표를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그 지위에 있는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대체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나, 그 사업자의 규모가 커서 거래상대방이 당해 사업자와의 연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큰 경우(본사-대리점 관계 등)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심결례〉 OO전력 · △△제철 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95.8)

공정거래위원회는 OO전력 등이 공사발주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요인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징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7.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이나 판매거점을 정하는 경우까지 위법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엄격한 지역제한이나 고객의 요구에 의한 지역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결례〉 10개 출판사의 거래지역 제한 ('95.7)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사들이 지역총판의 판매구역을 지정하고 그 위반시 위약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8. 사업활동방해

사업활동방해란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아주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 경쟁사업자의 중요기술

등을 가지고 오면 유리한 조건으로 채용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경쟁사업자 인력으로 하여금 그 경쟁사업자의 비밀 등을 빼내오게 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당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경우 등은 위법으로 본다.

〈심결례〉 OO자동차(주) 등의 사업활동방해행위 (97.12)

공정거래위원회는 OO자동차(주)가 자신의 자회사인 (유)OO오토엔지니어링을 통해 자동차 설계 회사인 (유)△△인력개발의 직원 50명 중 41명을 유인·채용함으로써 (유)△△인력개발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지원이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또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또는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법여부는 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의 구조, 경쟁사업자의 경쟁여건, 지원의 규모 및 기간, 지원행위 전후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거래당사자가 중점심사대상²⁾이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경쟁여건이 상당히 유리해지거나 특정시장에서 유력한 지위가 형성 또는 강화될 수 있는 경우, 부실기업인 지원객체가 퇴출로부터 보호되는 경우, 그리고 지원객체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저해되는 경우는 위법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심결례〉 5대 기업집단에 대한 1차 부당내부거래조사 (98.6)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기업집단의 80개 지원업체가 35개의 수혜업체에 대하여 부도직전의 기업 어음(CP) 고가매입,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CP 고가매입, 증권예탁금 명목의 저리대여, 부동산 매각대금 지연회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 데 대하여 722억원의 과징금 부과

IV.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실적

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건수는 총 4,258건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전체 조치건수(15,511건) 중 가장 많은 비중(27.5%)을 차지하고 있다.

2) 중점심사대상의 요건 : ①지원주체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할 것, ②지원객체가 지원주체의 계열사일 것, ③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조치건수가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중심으로 그 요인을 살펴보면, 거래상지위 남용은 유통체계의 구조적 특징상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온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서, 특히 '86년 이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및 공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된 결과 가장 많은 조치건수(754건)를 보였다. 부당한 고객유인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많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조치건수(686건)가 상당히 많았다.

이 밖에, 차별적 취급행위는 '93~'94년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을 상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가 실시된 시기에 조치건수가 특히 많았고, 거래강제는 지속적인 단속과 소비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끼워팔기 등이 종전과 같이 용이하지 않아 시정조치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 까닭에 조치건수가 많았다. 또한, '97. 4월 규제근거규정이 신설된 부당지원행위는 대기업집단들의 변칙적인 내부거래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IMF 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97~'98년 중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기간 중에 비교적 많은 조치건수를 보였다. **공정**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판매 안내

본 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제21권2집**

심결을 분기별로 수록한 「공정거

* 2001년도 2/4분기(2001. 4. 1 ~ 6. 30) 심결 수록, 919면 정도

래위원회심결집」을 발간하여 다

* 2001년 7월 25일 발간

음과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 판매가격 : 회원(사) 35,000원, 비회원(사) 40,000원

경쟁거래관련 시장에 관련 분야 및 구단신장은 문화조서부(02·775·8870-2)로 주시기 바랍니다.